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585
----------	-------

발의연월일 : 2026. 8. 14.

발 의 자 : 임종득 · 서천호 · 이상휘
김용태 · 김태규 · 김정재
김기현 · 김성원 · 김상훈
김희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요응답형 교통(DRT, Demand Responsive Transport)은 고정된 노선이나 시간, 횟수가 미리 정해져 있지 않고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특히 농촌 지역 고령화와 버스 노선 축소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 교통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시·도에서 DRT를 운영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DRT를 확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가 또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가도 DRT를 운영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DRT를 활성화하여 교통취약계층의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제8호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를 삭제한다.

8의2.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0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여 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 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50조(재정 지원) ① ----- ----- ----- ----- ----- ----- -----.
1. ~ 8. (생 략) <u><신 설></u>	1. ~ 8. (현행과 같음) <u>8의2.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u> <u>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u> <u>업</u>
9. (생 략) ② 시·도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 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 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 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	9.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다. 1. ~ 5. (생략) 6.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 <u>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u> <u>을 운영하는 경우</u> 7.·8. (생략) ③ ~ ⑨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u><삭제></u> 7.·8. (현행과 같음) ③ ~ ⑨ (현행과 같음)
--	--